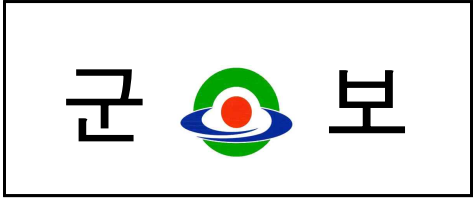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7호 2026. 5. 2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예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6-49호)

공 고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6-822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150번지 일원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체육시설	양궁장	예천읍 청북리 150번지 일원	275,890	감) 31,745	244,145	예천군 고시 제1995-635호	

■ 변경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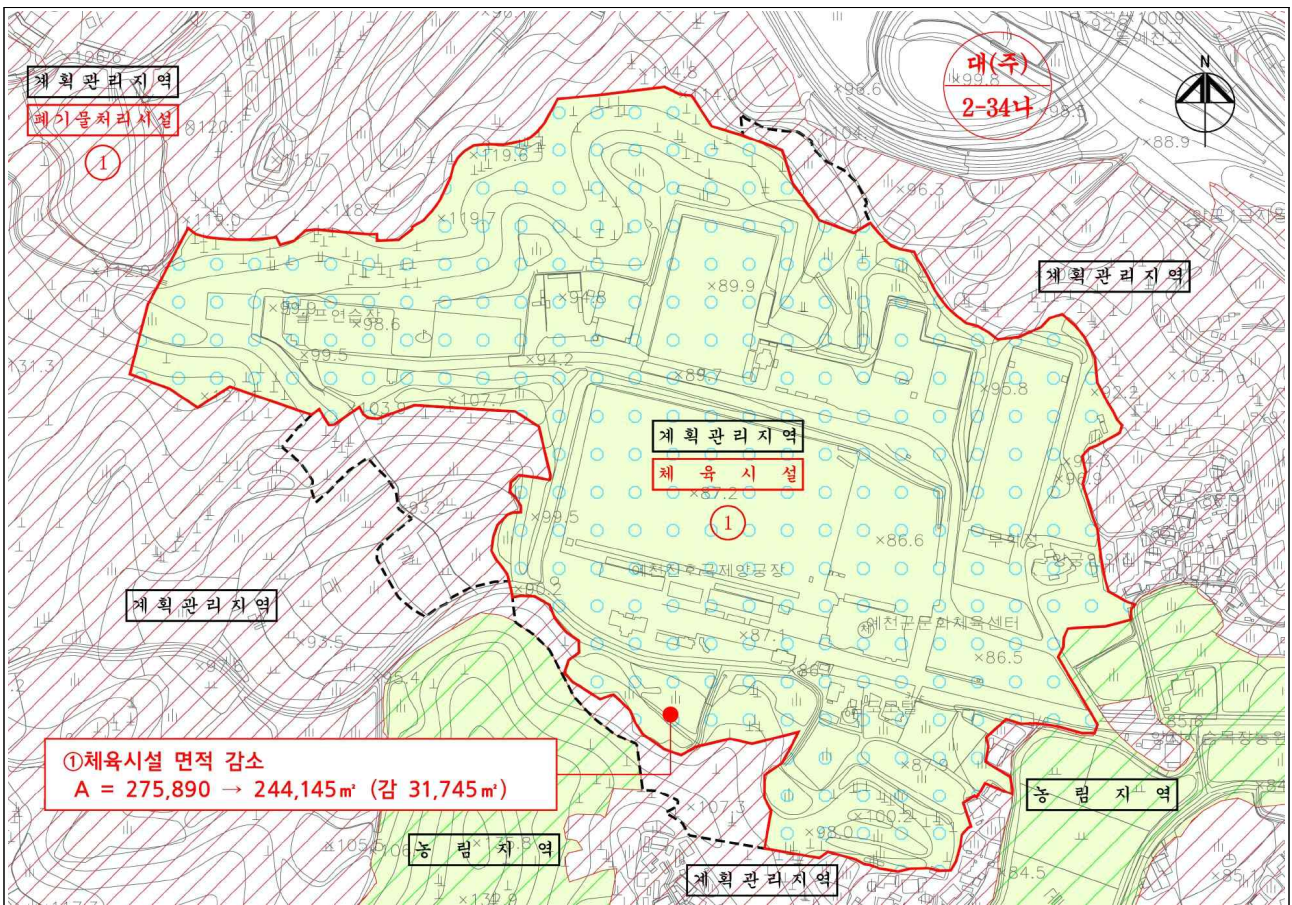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체육시설 면적 감소 $A = 275,890 \rightarrow 244,145$ m^2 (감 31,745㎡)	예천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 구역 조정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예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 정 이 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제4조)

○ 디지털 기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 및 생산·연구·실증 기능 수행

나. 운영체계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5조~제7조)

○ 군 직영 원칙, 필요시 전문기관(기업) 위탁 가능

다. 시설 사용·입주 및 관리 기준 규정(안 제8조~제14조)

○ 사용·수익 허가, 입주자 선정, 사용료 부과 기준 마련

라. 입주자 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안 제15조~제16조)

○ 교육·컨설팅 지원 및 운영성과 평가

마.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제23조)

○ 주요 운영사항 심의·자문 기능 수행

바.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24조~제25조)

○ 관계 법령 준용 및 시행 사항 규정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ddyplus@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농정과

3) 팩스 : 054-650-62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농정과(전화 : 054-650-62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이하 “농업타운”이라 한다)이란 스마트 농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연구·실증·교육 기능 등을 집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하여 조성된 농업타운을 말한다.

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나. 임대형 수직농장

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라. 공동급식소 및 저온저장고

마. 기타 시설 등

2.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란 곤충 및 양잠산업의 생산·가공·연구·실증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조성된 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기업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3. “임대형 수직농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

직형 농업시설로서, 농업인 또는 전문기관(기업)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농업타운 내에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4.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작물 생산 및 실증을 목적으로 농업타운 내에 설치하여 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스마트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5. “혁신 지원센터”란 농업타운 지원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농업타운의 시설을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적용범위 및 기능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타운 내 예천군 소유의 토지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농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의 조성 운영
2. 임대형 수직농장의 조성 운영
3.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연구 및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5. 청년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교육·실습·창업 지원
6. 디지털 농업 확산 및 농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주체) 농업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관의 지정 및 위탁)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농업회사법인, 지방공기업 또는 관련 전문기관(기업)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군수는 운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농업타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영 목표, 시설 관리, 입주자 지원, 성과관리 등 농업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3. 입주자 지원 및 관리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사용·입주 및 관리

제8조(사용허가) ① 농업타운 내 시설을 사용·수익하려는 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 등의 사용허가 절차, 사용기간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입주자 선정) ① 농업타운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절차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농업타운 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농업타운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군수가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공익적 목적 또는 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및 입주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입주자는 농업타운 내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사용허가서에 명기된 사항과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 까지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1. 예천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입주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입주자가 사용허가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또는 입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입주자는 지체없이 관련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지원 및 성과관리

제15조(입주자 지원) 군수는 농업타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시범사업 및 실증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6조(성과관리 및 평가) ① 군수는 농업타운 운영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 결과를 농업타운의 운영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농업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문을 위하여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농업타운의 운영 및 발전 방향
2. 입주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1명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등에서 스마트팜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

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업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타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회의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공익을 해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2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지방자치법」 및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 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따른다.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

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 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상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동식물 관련 생산·제조·가공 시설 및 생육·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발생
- 시설 운영 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장비 유지 및 운영비 등 지속적 재정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본 비용추계는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운영에 따른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 비용추계 기간은 2027년 ~ 2031년으로 함.
- 자산취득비 및 일부 시설비(CCTV 설치 등)는 1차년도에 한하여 반영함.
- 세입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료 부과 기준 (연 1천분의 10 범위)을 적용하여 산정함.

※ 세입은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치이며, 향후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임대료(곤충양잠)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임대료(수직농장)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50,000
	임대료(스마트팜)	246,000	246,000	246,000	246,000	246,000	1,230,000
	소계(a)	616,000	616,000	616,000	616,000	616,000	3,080,000
세출	사무관리비	234,586	234,586	234,586	234,586	234,586	1,172,930
	인건비	71,270	71,270	71,270	71,270	71,270	356,350
	공공운영비	193,600	193,600	193,600	193,600	193,600	968,000
	재료비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시설비	117,000	80,000	80,000	80,000	80,000	437,000
	자산취득비	438,500	-	-	-	-	438,500
	기타보상금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소계(b)	1,132,956	657,456	657,456	657,456	657,456	3,762,780
□ 총 비용(a-b)		△516,956	△41,456	△41,456	△41,456	△41,456	△682,78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군 비	1,132,956	657,456	657,456	657,456	657,456	3,762,780
민 간						
기 타						
합 계	1,132,956	657,456	657,456	657,456	657,456	3,762,78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농정과 지방행정사무관 박완우(054-650-626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132,956천원(1차년도)

항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계	1,132,956	
사무관리비	234,586	- 234,586천원*1식 (홍보물, 시설점검 및 각종 용역비,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인건비	71,270	- 2,969천원*2명*12월 (기간제 2명, 청사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193,600	- 193,600천원*1식(전기·수도·통신요금)
재료비	8,000	- 8,000천원*1식(조경관리 비료, 제초작업 농약 등 구입)
시설비	117,000	- 117,000천원*1식(농업타운 시설 및 장비 응급복구비, 전광판 설치 등)
자산취득비	438,500	- 438,500천원*1식(생산 및 물류 장비 구입(지게차, 리프트 등))
기타보상금	70,000	- 70,000천원*1식(교육컨설팅, 강사료 등))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예천군 농정과	작 성 자	이름	박정율
	부서장	박완우		직급	지방시설주사보
				연락처	054-650-6292
	팀 장	박진영		이메일	eddyplus@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사용허가)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집단 : 농업타운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입주자 ○ 이해관계자 : 해당없음				
5. 규제존속기한	예천군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운영 종료 시까지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입주자 의무 및 사용 허가 취소·제한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농업타운 시설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주자 의무 부과(안 제11조) - (관리책임)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명시 - (임의변경 금지)군수 승인 없는 시설 훼손 및 구조 변경 금지 ○ 부적정 이용자 배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허가 취소 규정 (안 제14조) - (위반제재)허가조건 위반, 부정방법 입주, 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 - (원상회복)허가 취소 시 시설물 지체 없는 반환 의무 명시				
8. 참고사항	해당없음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입주자의 의무 부여 (안 제11조)

- 주요내용 : 시설 및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무단 구조변경 금지,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 제3자 대부·전대 금지 등을 명시함.
- 신설사유 : 공공자산인 농업타운 시설의 사적 점유 및 훼손 방지와 공익적 목적에 맞는 이용 담보를 위함.

○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안 제14조)

- 주요내용 : 허가조건 위반, 허위 허가, 사용료 미납 등의 경우 허가 취소 및 사용 제한으로 공용목적에 맞는 이용 담보
- 신설사유 : 부적격 이용자 배제 및 행정재산 관리의 실효성 확보

〈조문 대비표〉

현	행	신 설 안
		제11조(수탁자 및 입주자의 의무) ① 수탁자 및 입주자는 농업타운 내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했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제3자에게 담보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입주자는 사용허가서에 명기된 사항과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⑤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희망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4.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입주자는 지체없이 관련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규제 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인프라 구축에 따라 고가의 시설(곤충양잠, 수직농장, 스마트팜 등)이 조성됨.
- 시설의 관리 의무나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미비할 경우, 공공시설의 조기 노후화나 특정인의 사적 이익 편취 등 운영상 혼란이 우려됨.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재산 보호 :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부과하여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조성함.
- 공정성 확보 : 전대 금지 및 허가 취소 규정을 통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청년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함.

다. 대안점토

- 수탁자 및 입주자 의무 및 허가 취소 조건 미 규정시
 - 시설물 훼손 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부적정 입주자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 불능 등 행정 신뢰도가 하락함.

라. 기대효과

-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통한 스마트농업 실증 환경의 질적 향상
-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농업타운 운영의 효율성 증대

4. 규제 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시설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공공재산의 가치 보존과 적기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청년농업인 정착 활성화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상위 법령과 지자체 표준 조례의 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 범위가 명확하고 객관적임.

6. 결론

- 본 규제는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자산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장치임.
- 피규제자의 권리 침해보다 시설 보호 및 운영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므로 신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7. 관계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제2,3호 생략)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제20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